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03
------------	------

발의연월일 : 2016. 11. 23.

발 의 자 : 박완주 · 박재호 · 김종회

김정우 · 민홍철 · 위성곤

김영춘 · 윤관석 · 김해영

임종성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의2(강제징수) ① (생 략)</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u>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u>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p>	<p>제30조의2(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 ----- ----- ----- -----.</p>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